

#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31,000,000	33,930,000
일반회계	1,032,090,000	30,962,700
특별회계	98,910,000	2,967,300
공기업특별회계	74,700,000	2,241,000
수도사업특별회계	44,300,000	1,329,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0,400,000	912,000
기타특별회계	24,210,000	726,300
수질개선특별회계	5,706,000	171,18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320,000	99,60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200,000	6,0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69,000	8,07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759,000	22,770
치수사업특별회계	999,000	29,970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477,000	14,310
주차장특별회계	12,480,000	374,4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8,568,976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3,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의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